

#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4. 7. 19.
기획재경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평생교육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7. 5.(금)
- 회부일자: 2024. 7. 5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7. 19.)

### 2. 개정이유

- 필수위임조례의 경우 근거되는 법 조문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 조항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률 근거 조항 명시(안 제15조)

#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
  - 「도서관법」 제34조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」
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- 입법예고(2024. 5. 21.~6. 11.): 의견 없음

## **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**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도서관법」(2021. 12. 7. 전부개정, 2022. 12. 8. 시행) 개정예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## 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**

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